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3. 3.
사회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 가. 제출일자: 2021년 2월 17일
- 나. 발 의 자: 김화영 의원 외 4명
- 다. 회부일자: 2021년 2월 24일
- 라. 상정일자: 제22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1. 3. 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화영 의원)

- 가. 제안이유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려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실태조사 시 어린이, 보호자 등 이용자

의 의견 수렴에 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제2항)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원배)

○ 본 안건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려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자 발의된 개정 조례안임.

○ 주요내용은

- 안 제5조제2항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실태조사 시 어린이, 보호자 등 이용자의 의견 수렴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 안 제9조의2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음.

○ 본 조례안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민식이법)이 지난 해 3월 시행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는 등 여전히 어린이 교통안전이 위협 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조례 개정을 통해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권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 및 교통안전 향상이 기대되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화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 316 호
----------	---------

발의년월일 : 2021년 2월 일

발의자 : 김화영 의원 외 4명

1. 제안이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려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실태조사 시 어린이, 보호자 등 이용자의 의견 수렴에 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제2항)
- 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의2)

3. 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유아교육법」,
「초·중등 교육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입법예고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이용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 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실태조사) (생 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5조(실태조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u>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이용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u>제9조의2(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 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u></p> <p><u>②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u></p>